

환경경영 체제(ISO 14000) 시리즈

ISO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회원국의 경제적 여건이나 산업구조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ISO의 각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공표하기까지 대부분 5년 이내에 작업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작업 과정은 제안, 준비, 위원회, 승인, 공표 등 다섯 단계를 거친다.

1. ISO 14000 시리즈의 제정 연혁

시기	주요행사	주요내용	비고
1991	ICC/BCSD의 발의	• ISO에 환경경영 국제표준화 작업요청	
1991. 2	ISO 산하에 환경전략자문그룹(SAGE) 설치	• 환경경영 국제표준의 필요성 검토	ISO/IEC 공동
1992. 6	유엔환경개발 회의(리우 정상회의)	• 의제21에서 환경경영 국제표준 프로그램 촉구	브라질, 리우
1992. 10	SAGE의 건의	• ISO에 환경경영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술위원회'설치 건의	SAGE 해체
1993. 2	ISO 환경경영 기술위원회(TC 207)설치	• ISO 18000 규격 제정작업 착수 • 6개의 분과위원회(SC) 설치	ISO/TC 207
1993. 6	1차 ISO/TC 207 총회	• 분과위원회별 활동계획 작성	캐나다, 토론토
1994. 5	2차 ISO/TC 207 총회	• 환경경영 국제 표준규격의 명칭을 ISO 14000으로 변경	호주, 브리스베인
1995. 7	3차 ISO/TC 207 총회	• EMS(14001)와 EA(14010) 국제표준을 DIS로 승인	노르웨이, 오슬로
1996. 6	4차 ISO/TC 207 총회	• EMS/EA 국제표준 공표결정 • 기타안건 : EL, EPE	브라질, 리우
1997. 4	5차 ISO/TC 207 총회	• 주요안건 : EL, EPE, LCA	일본, 교토
1998. 6	6차 ISO/TC 207 총회	• EL, EPE, LCA 등의 국제표준 논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1999. 6	7차 ISO/TC 207 총회(예정)	• ISO 14001, 14010 ~ 12 재검토	한국, 서울

2. 국제표준규격의 제정 원칙

1)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consensus)

정부, 산업계, 소비자, 엔지니어, 과학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2) 가급적 많은 산업에 적용(industry-wide)

국제표준은 가급적 여러 산업부문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정한다.

3) 자발적 참여(voluntary)

국제표준은 시장경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관심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3. 국제 표준규격의 제정 단계

ISO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회원국의 경제적 여건이나 산업구조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ISO의 각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공표하기까지 대부분 5년 이내에 작업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작업과정은 제안, 준비, 위원회, 승인, 공표 등 다섯 단계를 거친다.

1) 제안단계

새로운 국제표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신규작업항목(new work item)의 채택에서부터 표준화 작업이 시작된다. 신규작업항목은 관련 기술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와 5개국 이상의 P회원이 신규작업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채택된다.

2) 준비단계

준비단계에서는 각 분과위원회를 주관할 간사(convener)를 결정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문서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한다. 각 작업반에서 만들어진 표준의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의 토의를 거쳐 작업초안(working draft : WD)으로 작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작업초안은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P회원에게 찬반 여부

를 물어 위원회초안(committee draft : CD)으로 채택한다.

3) 위원회 단계

위원회 초안으로 채택된 표준(안)은 ISO의 중앙사무국에 등록된다. ISO의 중앙사무국은 위원회초안(CD)을 다시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P회원에게 배포하여 여러 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쳐 국제표준 초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 : DIS)을 만들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초안(DIS)을 추가적으로 수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마지막 단계의 위원회 초안은 최종 국제표준 초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 FDIS)이 된다.

4) 승인단계

국제표준 초안 혹은 최종 국제표준 초안은 ISO 중앙사무국에 제출되며 이 단계에서 영어로 작성된 규격외에 불어판 국제표준 초안도 만들어진다. ISO 사무국은 이를 정식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 IS)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전 회원에게 국제표준 초안을 배포하여 의견을 묻게 된다. 의견조회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P회원 3분의 2 이상과 ISO 전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면 국제표준(IS)으로 확정된다. 만약 부결되면 해당 국제표준 초안을 관련기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정작업을 하도록 한다.

5) 공표단계

ISO는 확정된 국제표준을 최종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전회원을 대상으로 2개월간에 걸쳐 의견을 다시 조회한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국제표준은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ISO 중앙사무국은 그 내용을 공표한다. 국제표준은 일반적으로 매 5년마다 해당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검토·개정된다.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과 환경심사에 관련된 규격인 ISO 14010~12는 일반적으로 ISO에서 국제표준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작업기간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3년만에 종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ISO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영국, 아일랜드, 유럽 연합 등과 선진국 화학업계에서는 이미 환경경영체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규격이 조기에 제정되지 않으면 여러 지역 혹은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경영체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아울러 지역별·국가별 환경경영체제가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②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정부, 주주, 종업원, 금융기관, 환경단체, 일반대중 등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이들로부터의 압력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③ 환경적으로 건전한 그린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비롯한 투자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실태를 중요한 평가요소의 하나로 고려하게 되었다.

④ 기존의 환경경영 체제들은 대부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제3자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환경경영 체제는 국내외에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환경라벨링, 환경성과평가, 전과정평가 등도 환경경영체제와 연계되어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ISO/TC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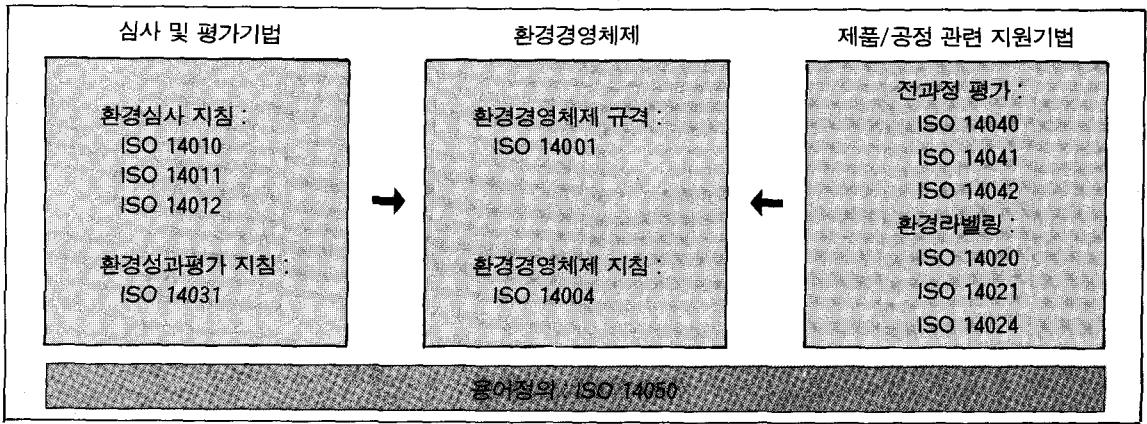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술위원회로서 환경경영과 관련된 제반 규격과 지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ISO/TC 207은 각 주제별로 6개의 분과위원회와 17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TC 207의 사무국은 캐나다가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 네델란드, 호주,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ISO/TC 207에는 1999년 3월 현재 74개 회원국이 있는데 58개국의 P회원과 16개국의 O회원국이 있다.

1) ISO/TC 207 구조

[표] ISO/TC 207 구조

ISO/TC 207					
환경경영(캐나다)					
SC1	SC2	SC3	SC4	SC5	SC6
환경경영 체제(EMS)	환경심사 (EA)	환경라벨링 (EL)	환경성과 평가(EPE)	전과정평가 체제(EMS)	용어정의 (T & D)
(영국)	(네델란드)	(호주)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격(WG1) 지침(WG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원칙 (WG1) 심사절차 (WG2) 심사원자격 (WG3) 환경현장평가 (WG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원칙 (WG1) 자기선언 (WG2) 기본원칙 (WG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부문 환경 성과평가(WG1) 운영부문 환경 성과평가(WG2) ISO 14031예 제 개발(WG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원칙/절차 (WG1) 일반목록분석 (WG2) 특정목록분석 (WG3) 영향분석(WG4) 해석(WG5) 	정회원 24 준회원 18 WG1 제품표준에 관한 환경측면 WG2
					산림에 대한 환경 경영체제

주: ()안은 각 분과위원회 및 작업반 사무국임.



2) ISO 14000 시리즈의 구성

(1) 환경경영 체제(EMS)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의 환경관리 활동을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오염방지 및 범규준수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은 환경방침의 공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경영 추진계획 등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감사 또는 경영자 검토 등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환경경영 체제는 제3자의 인증을 통하여 조직의 환경경영에 대한 객관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2) 환경심사(EA)

환경심사에 대한 일반원칙과 절차, 환경심사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환경경영 체제에 대한 심사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에는 성과심사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3) 환경라벨링(EL)

환경라벨링에서는 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3자 인증을 위한 환경마크 부착에 따른 지침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과 기업이 자사제품의 환경성을

스스로 주장하는데 대한 일반지침 및 원칙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환경성과 평가(EPE)

조직활동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조직의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절차, 그리고 환경성과를 대내외에 보고하는 방법 등이다.

(5) 전과정 평가(LCA)

전과정 평가는 어떤 제품, 공정 및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사용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환경성과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의 한 방법이다. ISO에서는 환경경영체제의 구축도구로 사용하고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하고 있다.

(6) 용어 정의(T&D)

ISO/TC 207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격 및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목적은 각각의 규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조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통일된 용어 정의 규격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작업은 환경경영에 관한 공통된 국제언어를 창출하는 것이다.